

건축사자격상호인정문제와 대책

The Counterplans for Mutual Approval on the Licensing of Architects

이관영 /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본협회 이사
by Lee Kwan-Young

배경

1994년 모로코의 마라케시(Marrakesh)에서 체결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됨과 동시에 전문 직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교섭이 본격화 되었다. 그 결과 회계사자격의 국제적 상호통용(상호인정)에 관한 원칙이 합의에 이르게 되고, 건축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비롯한 다른 전문분야에의 교섭이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건축가협회(UIA)는, 스스로 「건축실무에 대한 Professionalism의 국제권장기준에 관한 UIA표준」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건축사 자격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기로 하였다.

지난 6월 북경에서 열린 제 21차 UIA대회에서 채택된 「표준안」에 따르면, 「건축사의 기본요건」으로는, 1985년 8월 유럽공동체(EC; 지금의 유럽연합 EU)에서 채택된 내용을 그대로 UIA에서도 채택하였고, 이러한 기본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건축교육으로서 최소 5년 이상의 인가된 대학의 인증된 전일제 건축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실무훈련」 「시험과 등록」 「계속교육」 등 건축사에게 필요한 기본요건에 대하여 상세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겐 생소한 「교육인증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무훈련」과 「계속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기존건축사에 대한 상호인정방안과 탈락자에 대한 대책 마련, 건축사제도를 비롯한 관련법규정의 개정 등 실로 방대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현안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사자격상호인정에서 비롯된 문제점과 대책, 협회의 입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교육프로그램

우선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기간에 대하여는 건축교육에 관한 UIA/UNESCO현장을 기초로하여 우리나라 교육문화와 관습에 맞는 교육제도가 연구·개발되어야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하여는 현재 건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계에서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공·사립에 따라 교육기관자체의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와 건축사 이외의 건축기술자를 위한 건축공학과의 분리문제, 타 전공분야와의 관계, 필요한 법제도의 개정 등 매우 복잡한 문제이긴 하나, 빠른 시간안에 협회의 의견을 내놓을 계획으로 있다. 왜냐하면 건축교육은 바로 건축사가 되기위한 자격요건이므로 등록건축사단체인 협회가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는 5년제의 건축대학안과 4+2안, 4+3안 등 여러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나, 건축사협회로서는 교육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간섭보다는 건축사가 되는데 필요한 성과지향수행기준(Achievement-Oriented Performance Criteria)을 제시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그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공학(Building Engineering)과 건축학(Architecture)의 교육프로그램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국제적으로 동등성을 가질수 있는 성과지향수행기준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건축공학분야에서 배출되는 기술자

(Building Engineer)에 대한 국제간 상호인정문제도 워싱턴 협정(Washington Accord, WA)이나, APEC의 기술자상호 인정프로젝트에 의하여 거론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공학교육에 비추어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y)」을 가질 수 있도록 고유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협회로서는 건축학과 건축공학의 분리를 원칙으로 한 교육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흔히 현재의 교육적 환경이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고는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여서는 머지않아 국제사회에서 낙오하고 말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는 관련 3단체, 특히 건축학회를 비롯한 교육계, 관계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다.

교육인증프로그램과 인증기구의 설립

교육인증프로그램

교육인증이라 함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해당교육기관의 건축교육프로그램이 건축사가 되는데 필요한 「성과지향수행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평가하여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인증을 위한 기준, 즉 「성과지향수행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건축교육인증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우리로서는 이미 인증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할 수 밖에 없을 뿐더러, 인증제도의 목적이 국제적으로 건축교육의 동등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성과지향기준은 대략 「기본적 지식」, 「설계」, 「정보교환능력」, 「건축실무」의 4가지로 대별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인식(Awareness)」, 「이해(Understanding)」, 「능력(Ability)」의 3등급으로 나누어 상세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를 위한 준비기구로서 협회외에도 건설교통부의 건축사자격상호인정대책반(건축관련3단체 즉, 「건축학회」 「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와 교육부가 참여)이 활동중에 있는 바, 최초의 시안은 공학교육인증원(가칭)의 간사학회인 「건축학회」에 의하여 발표된 바 있다. 이 「시안」 역시 미국의 건축교육인증기구인 NAAB(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의 안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내용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인증대상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4+2안 또는 4+3안에서의 4년과정(Undergraduate)에 다소 이견이 있었고, 건축인증기능을 공학교육인증원 안에 두고자 하는 문제는 「합리성」과 「정합성」에 대한 이견이 있어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 자세하게 이야기 할 것이나, 경위야 어찌되었던 이러한 인증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이러한 연구를 통합조정하기 위한 「건축3단체협의회」라는 공식기구가 있고, 「건설교통부대책반」이라는 연구모임에도 3단체가 나란히 참여하고 있음에도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인력과 비용의 중복투자라는 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인증프로그램은 위의 성과지향수행기준이외에도 「인적자원(교육을 위한 충분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였는가에 대한 기준)」, 「물리적 자원(교육을 위한 시설)」, 「정보자원(충분한 도서, 자료와 이용을 위한 장치)」, 「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제도」, 「재정지원과 제도적 지원에 대한 기준」 등을 인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우리의 현실로 보아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이와같은 「국제적으로 동등성을 갖는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감안하여 기준을 완화한다면, 「국제적으로 동등성」을 잃게되므로 옳지않은 일이다. 최근에 교육인증제도를 도입한 중국의 경우 건축학분야에서 78개 교육과정 중에 60여개 과정이, 건축공학분야에서 230개 과정중 212개 과정이 인증에서 탈락될 만큼 강도높은 인증작업을 시행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건축교육인증기구의 설치

위와같은 기능을 하는 인증 기구는 교육기관이나 교육관련단체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그 판정에 대하여 「권위」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건축사가 되기위한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건축사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기구가 주체가 되어 「기준」을 정하고 「인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 건축사등록기구인 NCARB(미국)나 RIBA(영국), NABAR(중국) 등이 이러한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건축사등록기구에 해당하는 기능이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로 분산되어 있으나, 이러한 등록기구를 비정부기관(NGO)화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건교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의와 병행하여 건축사협회는 우리나라 유일한 등록건축사단체로서 건축인증프로그램의 마련에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교육인증제도 자체가 우리에게 생소한 제도인 까닭에 제도의 준비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듯 하다. 즉 건축계의 일각, 특히 건축학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건축계에서, 공학교육인증을 목표로 설립추진중인 공학교육인증원(ABEEK)에 건축학에 대한 인증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

다. 우선 공학인증원은 그 출발에서부터 미국의 ABET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를 모델로 한 것으로, 미국에서조차 건축교육은 ABET와 전혀 다른기관인 NAAB(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Inc.)에서 시행하고 있다. 공학인증원이 건축공학(구조, 설비, 전기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축공학분야의 간사기구로 건축학회를 선정하였고, 건축학회에서 편의상 건축공학 뿐 아니라 건축학에 대한 인증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하였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 면도 있으나, 건축학인증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성과지향수행기준(Achievement-Oriented Performance Criteria)은 어디까지나 건축사 등록 기구에 의하여 요구되어야 함은 물론, 인증기구도 공학인증기구와는 별도의 건축교육인증기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굳이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우리 협회로서는 3단체 협의회와 공청회에서 이와같은 의견을 거듭 밝힌 바 있고, 5월 28일의 공청회에서도 이와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져 건축학인증프로그램은 공학인증원에서 제외키로 결론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학회에서는 건축학교육인증을 공학인증원에 포함시키려는 뜻을 관철시키고자 다른 관련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회 단독으로 이를 공학인증원에 제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협회는 다음과 같이 잘못을 지적하고, 이러한 뜻을 건축학회와 공학인증원에 전달할 바 있다. 첫째, 학회가 임의로 건축학교육인증을 공학인증원에 의뢰한다고 해서 공학인증원이 건축학교육인증의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인증프로그램은 해당분야의 실무에 필요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으로, 실무자 집단에 의하여 인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건축학회는 건축관련단체의 하나일 뿐, 건축 실무자 집단을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입장차이를 조정하고, 건축계의 의견을 통합하기 위하여 3단체 협의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계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셋째, 학회에서 주최한 공청회의 결과,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은 공학교육인증원과 별도임을 분명히 하였고, 건축공학인증프로그램도 그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실무기술자(Professional Engineers)기구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던 바, 일부 인사들의 독단에 의하여 공청회의 결과가 무시되어 버린다면, 학회의 권위가 크게 실추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번 공청회에서 이러한 우려를 개진한 바 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건축계의 불협화음이 자칫 건축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염려이다. 이러한 오해와 잡음을 일소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

여는 건축관련 3단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인증제도에 대한 연구기관과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고, 건축계를 망라한 교육인증기구설립준비기구를 발족시켜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인증기구 설립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무훈련(Internship)프로그램

원칙적으로 건축교육은 통합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평가·통합하는 능력은 스튜디오중심교육을 통하여 길러진다. 외국의 경우 대학교육이 이와 같을 뿐 아니라, 졸업후에도 일정기간 설계스튜디오에서의 실무 훈련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무훈련은 건축사에 의하여 평가되고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졸업후 무려 5년여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실무경력일 뿐, 구체적인 실무훈련프로그램이나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편으로, UIA가 권장하고 있는 2년간의 실무 훈련에 비하여 훈련강도나 효과면에서는 오히려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도높은 실무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무훈련」을 실시할 경우, 오히려 현 제도보다 짧은 시간안에 효과적인 훈련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실무 훈련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건축사에게는 그 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계속교육」으로 대처하여 주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협회는 이러한 실무훈련이 제도화 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무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공청회 등의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개선·보완할 계획으로 있다.

시험/등록

국제적인 동등성을 갖는 자격의 상호인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교육과 실무 훈련에 대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건축사가 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바뀌어 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험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건축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지향기준」이 요구하는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30시간이 넘는 시험시간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

으로 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까지의 시험제도와 평가방법으로는 이러한 성취지향기준의 만족도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성취기준에 적합한 시험제도와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자격등록에 관해서 UIA기준은 현재의 우리 자격등록제도와 다소 차이를 갖고 있다.

등록의 취지는 일반인에게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거친 자격이 있는 전문가와 무자격자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무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격이 부족하다해서 생계수단을 빼앗기는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제도는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안전과 복지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는 직업에 한하여 시행되어 왔다. 자격의 심사에 있어 대다수의 국가들은 규제가 없으면 공공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며, 그 해악이 뚜렷한가, 국가에 의한 규제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 기존의 법규와 기준만으로 공공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직업을 규제하는 것이 공공에 대하여 어느정도 부담이 되고, 이익이 되는가 등의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등록제도가 임의의 강제이든간에 국제간의 건축사자격상호인정은 등록건축사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계속교육

계속교육(지속적인 경력개발)은 보다 높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적 능력에 대한 유지·발전을 통하여 사회의 요구에 맞는 학문적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평생학습과정이다. 이러한 계속교육프로그램 역시 국가간에 호환성과 상호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의 수강시간을 충족

해야 할 뿐아니라 프로그램의 학습효과도 평가받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교육의 이수학점은 이러한 학점의 제시를 요구하는 기관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존건축사에 대한 조치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사 면허를 획득하였거나, 건축사시험을 대기하고 있는 예비건축사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시험대기자에 대하여는 실무훈련기간의 추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험자격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면허를 소지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경력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하여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상호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에 따라 특별한 교육기구를 통한 보수교육을 통하여 자격의 상호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사정에 따라 상호인정을 받지 못한 기존건축사에 대하여는 국내설계시장에서만이라도 업무가 보장될 수 있도록 외교통상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협회는 우리와 사정이 유사한 일 본과 함께 한·중·일 협의회를 통하여 방법을 논의중이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문제는 WTO 체제에서의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한 우리 건축설계업계의 경쟁력강화와 직결된 문제이다. 가깝게는 시장개방에 따른 기존건축사의 자격상호인정문제에서부터 멀게는 국제적으로 동등성을 갖춘 건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에 이르기까지 오늘을 사는 우리 건축사의 책임이 무겁다. 모쪼록 줄고 상호인정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 협회의 대책 마련에 회원여러분의 깊은 참여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